

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

1.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은?

-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4[제10조의2제3항]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.

- ①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
- ②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
※ 다만 ②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'15년 현재 없으므로 ①호 기준만 적용됨

2. 응시자격에서 ①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?

- ①호 기준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**대학졸업자, 대학졸업예정자(학부전 공제한 없음)**이어야 하며(**공통조건**)
 - 추가로 ①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증명하거나, ②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(①, ②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)
- 대학원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,
 - 대학원의 **학과명, 전공명, 학위명**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**“심리”가 “상담”, “치료”가** 포함되는 과를 의미하며,
 - 단, 직업상담과 같이 교과과정상 심리학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

※ “심리학 분야”로의 인정 가능 확인을 위한 도움 자료

순번	구 분			인정여부
	학과명	전공명	학위명	
1	유아교육학과	유아교육 심리 전공	문학석사	인정
2	교육학과	상담 심리 전공	교육학석사	인정
3	예술치료학과	미술치료전공	예술치료학석사	인정
4	아동 심리 치료학과	-	심리치료학석사	인정
5	상담학과	기독교(가족)상담	상담학석사	인정
6	심리 치료학과	미술치료학전공	문학석사	인정

※예외조항: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과목인 심리학개론, 이상심리학, 심리검사, 임상심리학, 심리상담중 3과목 이상 이수하였을 때 인정 단, 이수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동일해야 함.

- 따라서 제출 하실 서류는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예정증명서와 1년 이상의 실습수련 증명서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증명서입니다.

3.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는?

-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**일반적** 비교

구 분	실습수련	실무경력	비 고
언제	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(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×)	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(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○)	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함
어디서	병원, 상담센터(대학교 부설 기관 포함) 등	병원, 상담센터(청소년상담센터, 심리연구소), 교정시설, 복지관 등	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넓음
무엇을	심리상담, 심리검사,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	심리상담, 심리검사,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의 실무	
어떻게	실습수련 감독자(Supervisor)의 지도를 받아서	감독자의 지도 필요 없음	
왜	(전공이수 과정으로,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관련) 실습수련을 인정받기 위하여	일정 보수를 받으며 사회생활(자아실현 등)	

- 따라서,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**실무경력과는 구분**이 되며,
 - “실습수련확인서(또는 실습수련증명서)”상에는 실습수련기간, 실습수련 내용,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한편, 실무 경력을 증빙하시는 경우에도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
 - 경력증명서 상에 재직기간, 담당업무내용(심리상담, 심리검사, 심리평가,

심리자문, 심리치료 등)이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- 아울러,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단, 실기접수기간(4일) 및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(실기접수기간+4일 까지, **접수기간내 서류미제출시 실기접수 불가**)에는 고용보험자료를 공단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없이도 경력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4. 실습수련증명서는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?

- 실습수련증명서 서식은 큐넷-자료실에 등재해 놓았으니 동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
- 앞서 안내해드렸듯이 “실습수련확인서(또는 실습수련증명서)”상에는 실습수련기간, 실습수련 내용, 실습수련 감독자*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“예시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만, **사실기관에서 실습수련을 받은 경우에는** 기관의 확인을 위한 절차로 **사업자등록증명원**(사업자등록증: 단,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습수련받은 기간이 이에 포함)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
5.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는데 회사(소속 기관) 서식 활용해도 되나요?

- 실습수련확인서와는 달리 **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**으로 정하고 있고, 일반적으로 회사 서식에는 담당업무내용(심리상담, 심리검사,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)이 누락된 사례가 많아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
- 가급적 첨부하는 법정 서식을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며, 첨부하는 경력증명서 "예시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- 다만, 회사 서식에서 재직기간, 담당 업무내용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.

6. 실습수련증명서 예시

실습수련증명서			
주소	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-4 (전화번호: 02 - 3271- 9114)		
성명	(한글) 홍 길 동	주민등록번호	790101-0000000
증명사항	실습기간	2010년 4월 1일 - 2011년 3월31일	총합계 1년 월 일 (실습수련기간은 만으로 산정)
	실습시간	주 3 회 (1일 8시간)	
	실습수련 내용(구체적으로 기재할 것)	장애아동관련 심리상담, 심리검사 등	
	실습수련 감독자(지도자)	박 ○ ○	비고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(임상심리사 1,2급)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실습수련확인서를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 위 본인 홍 길 동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			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. 20 년 월 일 기관명 : ○○병원 주소 : 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 전화번호 : 02-○○○○-○○○○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: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○○ 대표자 : 김 ○ ○ (인)			
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			
※ 주의사항 : 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(공·사문서의 위조, 변조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2항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근거하여 응시자력에 관한 수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			

7. 경력증명서 예시

■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7호서식]

경 력 증 명 서

※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 쪽)

제출인 (본인)	성 명 홍 길 동	주민등록번호 790101-0000000
	전화번호 010-000-0000	
	주 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-4 (전화번호: 02 - 3271- 9114)	

증명사항	재직기간		소속 및 직위	담당 업무 내용 (구체적으로 작성할 것)
	2011년 1월 1일 ~ 2012년 12 월 31일	2년 0 개월	상담심리사	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(MMPI,MBTI,진로발달심리상담 등)
	년 월 일 ~ 년 월 일	년 개월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년 개월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년 개월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년 개월		

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
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본인 홍 길 동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관명 : 00시 청소년 상담센터 전화번호 : 000-000-0000

주 소 : 00시 00구 00로 000번지

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: 000-00-00000

대표자 도 레 미 도례미 (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유 의 사 항

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
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이미 취득한
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(공문서·사문서의 위조, 변조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